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명칭을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 가능한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잔식의 명칭 변경
- 나. 기부 물품 제한 삭제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3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말한다)”을 “식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식 기부가”를 “예비식 기부가”로, “잔식 기부를”을 “예비식 기부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을 “(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잔식 기부”를 “예비식 기부”로, “잔식기부”를 “예비식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식”을 각각 “예비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잔식 기부 활성화”를 “예비식 기부 활성화”로, “잔식 및

잔식”을 “예비식 및 예비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한다.

제7조 중 “잔식”을 “예비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u> <u>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u> <u>관한 조례</u>		<u>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u> <u>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u> <u>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		제1조(목적) -----		
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		-----		
는 <u>잔식</u> 을 「식품등 기부 활성		-- <u>예비식</u> -----		
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잔식</u>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2. -----		
배식하지 않고 남은 <u>식품(식</u>		-- <u>예비식</u> ----- <u>식품</u> ----		
<u>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u>		-----		
<u>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말</u>		-----		
<u>한다)을</u> 생활이 어려운 자를		-----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		-----		
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		-----		

다.

3. ~ 6. (생략)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잔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

--.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

----- 예비식 -----

-----.

② ----- 예비식 기부 -----
----- 예비식 기부 -----

-----.

제4조(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예비식 기부 -----

----- 예비식 기부 -----

-----.

② -----
-----.

1. 예비식 -----

획

2. 잔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 기부 지도 및 감독

4.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잔식 및 잔식 기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생략)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2. 예비식 -----

3. 예비식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 예비식 기부 활성화-----
예비식 및 예비식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 예비식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② -----
-- 예비식 -----

-----.

제7조(표창) ----- 예비식 -----

-----.

[붙임 1]

관 계 법 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김 현 옥

현행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복지과), 044-320-3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말한다)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잔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잔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 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잔식 및 잔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 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의 민·형사상의 책임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2460호,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